

가상계좌서비스 이용계약서

(받을어음 수탁관리용)

주식회사 하나은행(이하 "갑"이라 한다)과 주식회사~~~~~ (이하 "을"이라 한다)은 받을어음 수탁관리를 위한 "가상계좌서비스 이용계약"을 다음과 같이 체결한다.

제 1조 목적

이 계약은 "을"이 "갑"의 "가상계좌서비스(받을어음 수탁관리용)"를 이용함에 있어서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조 업무범위

- ① "갑"이 "을"의 요청에 따라 "을"이 사용할 가상계좌를 생성하여 "을"에게 전송하는 업무
- ② "갑" (이하 "갑"의 모든 영업점 포함)이 "을"의 받을어음을 "을" 또는 "을"의 거래처(이하 "병"이라 한다)로부터 "을"에게 부여한 가상계좌로 수탁(수납)받아 보관 및 교환회부하는 업무(이하 "받을어음 수탁관리 업무"라 한다)
- ③ "을"의 가상계좌에 입금된 거래내역을 "을"이 조회 가능하게 지원하는 업무

제 3조 수탁대상

수표 및 그 지급장소가 은행 기타 이에 준하는 기관인 약속어음, 표지어음(이하 "어음"이라 한다)으로 한다.

다만, 수표의 경우에는 선일자로 발행된 수표로 한다

제 4조 계좌의 지정

- ① "을"은 "갑"이 제 2조에서 규정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을"이 이용할 수탁계좌와 동 수탁어음을 결제기일에 입금할 예금계좌(이하 "수탁어음 입금계좌"라 한다) 및 수수료 결제계좌를 아래와 같이 지정한다.

구 분	예 금 주	예 금 과 목	계 좌 번 호
수탁계좌			
수탁어음 입금계좌			
수수료 결제계좌			

- ② 수탁어음 입금계좌 및 수수료 결제계좌는 입출금이 자유로운 예금으로 한다.
- ③ "을"은 수탁계좌, 수탁어음 입금계좌, 수수료 결제계좌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그 내용을 "갑"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하며, "갑"이 변경 사실을 전산으로 등록을 마친 때 효력이 발생한다.

제 5조 업무 처리

제 2조에 의한 정한 수탁어음 업무처리는 다음에 의한다.

1. “을” 또는 “병”이 어음실물을 “갑”에게 제출하여 수탁 의뢰하면 “갑”은 어음실물을 수탁 한 후 수탁확인증을 수탁의뢰인에게 교부한다. 이때 “을”은 어음의 배서란에 “을”이 직접 또는 “병”으로 하여금 “을” 명의로 배서하도록 하여야 한다.
2. “갑”은 수탁한 어음을 기일에 결제 가능하도록 교환회부하여 그 대전을 수탁어음 입금계좌에 입금처리 한다. 다만, 수표의 경우에는 발행일을 지급기일로 간주하여 처리한다.
3. 전 1,2 항의 업무처리시 어음에 “을”의 배서가 누락된 경우 “갑”은 “을”을 위하여 “을” 명의로 배서를 대행하여 교환회부하며, 동 어음이 부도된 때에는 “갑” 또는 “병”이 대행한 배서에 대하여 “을”이 모든 책임을 지기로 한다.

제 6조 어음의 반환

받을어음 수탁어음 업무와 관련된 어음의 반환은 다음에 의한다.

1. 수탁보관중인 어음의 반환

수탁보관중인 어음의 반환은 어음수탁점(또는 수탁계좌관리점)에서만 가능하며, 위탁유가증권반환청구서에 의하여 “을”에게 반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을”이 “병”에게 반환할 것을 동의한 경우에는 “갑”은 “병”에게 반환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 “을”은 “갑”에게 수탁계좌의 거래인감을 날인(서명)한 위탁유가증권반환청구서(수탁계좌통장 사본첨부)를 제출하여야 하며, “병”은 수탁의뢰시 사용한 인감(서명)으로 날인(서명)한 위탁유가증권반환청구서를 수탁점(또는 수탁계좌관리점)에 제출하여야 한다.

2. 부도어음의 반환

부도어음은 “부도수표, 어음수령증”을 받고 “을”에게 반환함을 원칙으로 하며, “을”이 “병”에게 반환할 것을 동의한 경우에는 “갑”은 “병”에게 반환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 “을”은 “갑”에게 수탁계좌의 거래인감을 날인(서명)한 위탁유가증권반환청구서(수탁계좌통장 사본첨부)를 제출하고 “병”은 수탁의뢰시에 사용한 인감(서명)을 부도수표, 어음수령증에 날인(서명)하여야 한다.

3. “갑”은 어음의 반환과 관련하여 날인된 인감(서명)이 “을”의 수탁계좌거래인감(서명) 및 “병”의 수탁의뢰시 사용된 인감(서명)과 육안에 의하여 상당한 주의로서 대조하여도 틀림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정당한 수령인으로 간주하여 반환 하기로 한다.

제 7조 수수료 등

“을”은 본 약정과 관련하여 수수료는 다음과 같다.

1. 보관어음 수탁/반환수수료

가. 보관어음 수탁 / 반환 수수료란 “갑”의 영업점 중 계좌개설점 외의 다른 영업점에서 “을” 또는 “병”이 수탁/반환 의뢰한 경우 발생하는 업무취급 수수료를 말하며 수수료 금액은 수탁/반환시 각각 전당 ()원으로 한다.

나. “갑”은 월중 발생한 수수료를 매월 말일 기준으로 일괄계산하여 익월 10일(공휴일, 휴무일인 경우 익영업일)에 수수료 결제계좌에서 예금청구서 및 통장 또는 수표에 의하지 아니하고 인출한다.

다. 지급기일이 도래된 수탁어음을 수탁어음 입금계좌에 “을”이 입금할 경우 발생하는 송금수수료는 면제하기로 한다.

라. 기일도래전에 수탁어음을 반환할 경우에는 동 수수료를 환급하지 아니한다.

2. “을”이 수수료 등을 납부해야 한 날에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갑”은 본 서비스를 중단할 수 있다
3. “갑”은 수수료 등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 변경된 내용을 “을”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통지 후 별도의 의사표시가 없을 경우에는 통지일로부터 1개월이 경과되는 일의 익영업일(별도로 쌍방이 합의한 경우에는 해당일)부터 변경된 수수료를 적용하기로 한다.
4. 계약해지 등의 사유로 본 계약이 효력을 상실한 경우에는 효력상실 시점까지 발생한 미결제수수료는 본계약의 효력 상실일에 “을”의 수탁어음 입금계좌(또는 수수료 결제계좌)에서 예금청구서 및 통장 또는 수표에 의하지 아니하고 인출하며 부족금액이 발생한 경우에는 별도로 “을”에게 청구하기로 한다.

제 8조 전산운영

- ① “갑”은 “을”으로부터 제공받은 정보를 보안상 안전하게 처리할 수 있는 체제를 갖추어야 한다.
- ② 본 계약의 업무와 관련한 전산운용의 세부사항은 “갑”과 “을”의 전산실무 담당부서장이 별도로 협의하여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 9조 거래내용의 확인

“갑”과 “을”은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발생한 거래내용을 상호연결 된 전산망에 의거 출력된 자료에 의하여 확인하며 별도의 거래명세서를 작성 교부하지 않는다.
다만, 별도의 요청이 있고 쌍방이 합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 10조 비밀보장

“갑”과 “을”은 본 업무의 처리와 관련하여 취득한 정보와 자료를 본 업무 처리 이외의 목적에 사용하거나 외부에 유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법령에서 허용한 경우 등은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 11조 면책

- “갑”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서는 책임을 면하기로 한다.
1. 천재지변, 정전, 통신기기 회선장애, 기타의 사유로 인한 업무처리의 지연 또는 처리불능
 2. 쌍방이 합의하거나 정한 방법에 따라 정당하게 처리한 사항
 3. 제6조에 의거하여 “을” 또는 “병”에게 약속어음을 반환할 경우 거래인감(서명)등을 상당한 주의로써 대조하여 이상이 없음을 확인하여 처리한 사항
 4. “갑”의 통상적인 업무처리절차에 의거 고의나 과실없이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다한 사항

제 12조 약정기간

본 약정의 약정기간은 시행일로부터 1년간으로 한다. 그러나 약정기간 만료일 1개월전까지 서면에 의한 해지통지가 없을 경우에는 1년간씩 자동 연장되는 것으로 한다.

제 13조 변경

- ① 본 약정은 “갑”과 “을”이 서면합의에 의하여 변경할 수 있다.
- ② “을”은 거래인감, 상호, 대표이사 등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제 14조 해지

본 약정은 “갑”과 “을”이 서면합의시 언제든지 해지할 수 있으며, “갑”과 “을” 어느 일방이 해지하고자 할 경우에는 1개월전까지 상대방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제 15조 협의 및 준용사항

- ① “갑”과 “을”은 본 약정의 체결에 따른 수수료와 기타비용, “병”에 대한 협조, 본 약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 등에 대해서는 필요한 경우 언제든지 상호 협의하여 따로 정할 수 있다.
- ② 본 업무의 처리와 관련한 각각의 예금계좌 및 수탁계좌에 대한 개별적인 업무처리는 대상예금 및 거래약정의 거래약관을 준용한다.
- ③ 본 약정서에 정하지 않은 사항 및 약정내용에 대한 해석이 상호 다를 경우에는 상호 협의하여 결정하되 일반 상관습에 따른다.

제 16조 관할법원

본 계약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소송에 대하여는 민사소송법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제 17조 시행일자

본 약정은 약정을 체결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본 계약의 체결을 증명하기 위하여 2통의 계약서를 작성하여 기명날인하고 각 1통씩 보관하기로 한다.

20 년 월 일

갑 : 서울시 중구 을지로1가101-1
주식회사 하나은행
은행장

을 :